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진영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원내용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2월 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야광조끼, 방한장갑, 방한모 등 개인 보호용 물품 지원
2. 야광 반사판·페인트·테이프 등 재활용품 운반에 사용하는 손수레의 안전 개선용 물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발굴 및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